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5. 10. 20.

행정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10월 7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10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19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설위원회(2015.10.19)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서종석)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조항 신설 (안 제8조제2항)
-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로 한정 (안 제10조 및 제11조)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12조의2)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기영)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 하려는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8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법” 제13조의3제4항1)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는 것으로 지정 지역이 주택 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등에 지정 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조례 미비로 인한 혼선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안 제10조제6항은 대규모점포<sup>2)</sup>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과 관련하여 “법” 제8조제3항3)의 내용이 미반영 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대규모점포 등이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의 면적보다 10%이상 확장할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써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지배력 확대와 골목상권의 잠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규제조치로 보임.
- 안 제11조는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에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도록 “법” 제8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1)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④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 3)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타,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고, 미비한 조문 추가, 단어 띄어쓰기, 문장정리 등 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제 85 호 |
|----------|--------|

제출연월일 : 2015. 10.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및 위임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우리구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종전 조례에서 나타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조항 신설 (안 제8조제2항)
- 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로 한정 (안 제10조 및 제11조)
- 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12조의2)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3조의2, 제5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심사실시(대상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있음)
    - 제12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되는 의무휴업 명령 위반 및 대규모 점포등록 의무사항 등 규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의견반영)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원안동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 9. 03. ~ 2015. 9. 23, 20일간)결과 : 의견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대규모 점포”란**”을 “**“대규모점포”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준대규모 점포”란**”을 “**“준대규모점포”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대규모 점포**”를 “**대규모점포**”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제8조제3항(종전 제8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 또는 지정취소를 하고자 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변경**”을 “**변경 또는**”

지정취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정·변경”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취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정·변경과”를 “지정·변경 또는 지정취소와”로 하고, 제6항(중전 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변경”을 “변경 또는 지정취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지정취소 시 고려사항)”으로 하고,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을 “제8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지정취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정·변경대상”을 “지정·변경·지정취소 대상”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을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전단 중 “준대규모 점포”를 각각 “준대규모점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규모 점포”를 각각 “대규모점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규모 점포”를 “대규모점포”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을 “부적합하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 점포”를 “보완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규모 점포”를 “대규모점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의 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8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제6항제2호 중 “영등포구 전통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으로 하고,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및 대규모점포등과”를 “및 대규모점포 등과”로, “대형마트(대규

모 점포”를 “대형마트(대규모점포”로, “중대규모 점포”를 “중대규모점포”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8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조건 등”을 “조건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규모 점포”를 “대규모점포”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u>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u>을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 지역 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u>대규모 점포</u>"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li> <li>3. "<u>준대규모 점포</u>"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li> <li>4. "<u>대형유통기업</u>"이란 <u>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u>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li> <li>5. (생략)</li> <li>6. "<u>소상공인</u>"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u>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u>」 제2조제</li> </ol> | <p>제1조(목적) -----<br/>-----<br/>-----<br/>-----<u>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u> -----<br/>-----<br/>-----<br/>-----.</p> <p>제2조(정의) -----<br/>-----.</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u>대규모점포</u>"란 -----<br/>-----.</li> <li>3. "<u>준대규모점포</u>"란 -----<br/>-----.</li> <li>4. -----<u>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u> -----<br/>-----.</li> <li>5. (현행과 같음)</li> <li>6. -----<br/>-----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 -----</li> </ol> |

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8. (생략)

9.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 점포 등이 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한다.

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생략)

〈신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  
-----.

7. 8. (현행과 같음)

9. -----  
-----대규모  
점포 -----  
-----.

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생략)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 4. (생략)

제4장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

하여야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 또는 지정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지정취소 시 고려사항) -----  
-----제8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지정취소 ----  
-----.

1. 지정·변경·지정취소 대상 ---  
-----  
-----
2. ~ 4. (현행과 같음)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제10조(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 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구청장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10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  
-----

준대규모점포 -----

-----준대규

모점포 -----

-----

-----

-----

-----

-----

-----

② -----

대규모점포 -----

-----

-----대규모점포 -----

-----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규모점포 -----

-----부적

합하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

⑤ -----대규모점포 -----

신청자가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략)
2. 영등포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의2(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

-----  
-----  
-----.

⑥ 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의 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8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전통시장 -----  
-----  
-----

제10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  
-----  
및 대규모점포 등과 -----  
-----  
-----대형마트(대규모점포  
-----  
-----준대규모점포 -----  
-----

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2. (생략)

② (생략)

제11조(조건 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5에 따른 협의회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1. (생략)

2.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 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② (생략)

<신설>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조건 등의 부과) ① -----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8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경우  
-----  
-----조건 등 -----  
-----.

1. (현행과 같음)

2. 대규모점포 -----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